

의안번호	2208047
의 퇴 인	정준호의원
회 답 일	2025.4.30.
추계번호	25B062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62조제1항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과 <u>스마트 안전기술 활용계획</u> 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과 <u>스마트 안전기술 활용 계획</u> 의 사본을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제1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62조제1항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개정안은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스마트 안전기술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사본을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향후 관련 건설공사 시행 시 스마트 안전기술의 도입이 의무화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관련하여 법 제62조의3¹⁾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무선안전장비,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대통령령²⁾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토교통부의 출연금을 통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참고자료])

- 그러나 현시점에 건설공사별 스마트 안전기술 활용계획이 수립되기 전이어서 건설공사별 스마트 안전기술의 도입 범위,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 지원 신청 규모,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방식 등 추계에 필요한 기초정보가 불확정적이어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IV.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1) 제62조의3(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무선안전장비와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이하 생략)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7(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대상) 법 제62조의3제1항에서 "무선안전장비와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공사작업자의 실시간 위치 확인과 긴급구호 등이 가능한 스마트 안전보호 장구를 포함한 무선안전장비 및 통신 설비의 구입·사용·유지·대여 비용
2. 건설기계·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및 자동화재 감지센서 등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대여를 위한 비용
3. 가설구조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 등의 붕괴 방지를 위한 스마트 계측 또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포함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사용·유지·대여 비용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비용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국토안전관리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개요

국토안전관리원 제출자료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중·소규모(300억 미만) 현장의 사고 발생률이 가장 큰 비중(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공사현장 점검을 통한 사고예방에는 물리적 한계
 - 전체 사고 중 ·소규모 비율 '23년 160명/244명(65.5%), '24년 138명/206명(66.9%)
- 중대법 적용 대상이 50억 미만으로 확대('24.1.)됨에 따라 영세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지원 확대 필요
- 국정과제#69(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확대

□ 사업목적

-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제거하여 건설사고를 예방 및 저감
- 스마트 안전장비의 사고 예방 효과를 도출하고 홍보, 교육을 통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스마트화 유도

□ 법적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3(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7(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대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업무의 위탁)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총 사업기간	- '21.01.01 ~ (계속)
당해 연도 사업기간	- '25.1.1. ~ '25.12.31.
주요내용	-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 위주로 지능형 CCTV 등 시스템 기반 스마트 안전장비를 무상 지원 · 장비 설치 및 교육, 유지보수관리, 현장 안전관리 지원, 현장 지원 종료 시 장비 해체 후 타 건설공사 현장에 재설치 등 - 시스템 기반 장비 운용이 제한되는 소규모 건설현장 위주로 센싱 기반 스마트 안전장비를 무상 지원 · 장비 지원 및 교육, 유지보수관리, 현장 지원 종료 시 장비 회수 및 정비 후 타 건설공사 현장에 재지원 등
소요예산	- 3,056백만원
사업유형	- 공공사업

□ 세부 사업내용

- 사업기간: '25년 1 ~ 12월(연간), 계속 사업('21년~)
- 사업대상: 중·소규모 건설현장(순공사비 300억 미만)
- 수행주체: 국토안전관리원
- 지원형태: 일반출연금
- 주요내용: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및 지원사업 운영
 - (본사업) 순공사비 300억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지능형 CCTV 등 시스템 기반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

《본사업 지원품목 LIST》

구 분	지능형 CCTV (고정·이동형)	붕괴·변위 위험경보기	개구부 개폐 감지기	스마트 풍속계	스마트 양생 센서	건설안전 S/W
사진 (장비명)						
대응 재해유형	낙하, 화재 등 4종	물체에 맞음	넘어짐, 떨어짐	물체에 맞음, 전도	갈림	업무 지원

- (시범사업) 순공사비 50억 미만의 영세한 소규모 건설현장에 스마트 에어백 조끼 등 센싱 기반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

《시범사업 지원품목 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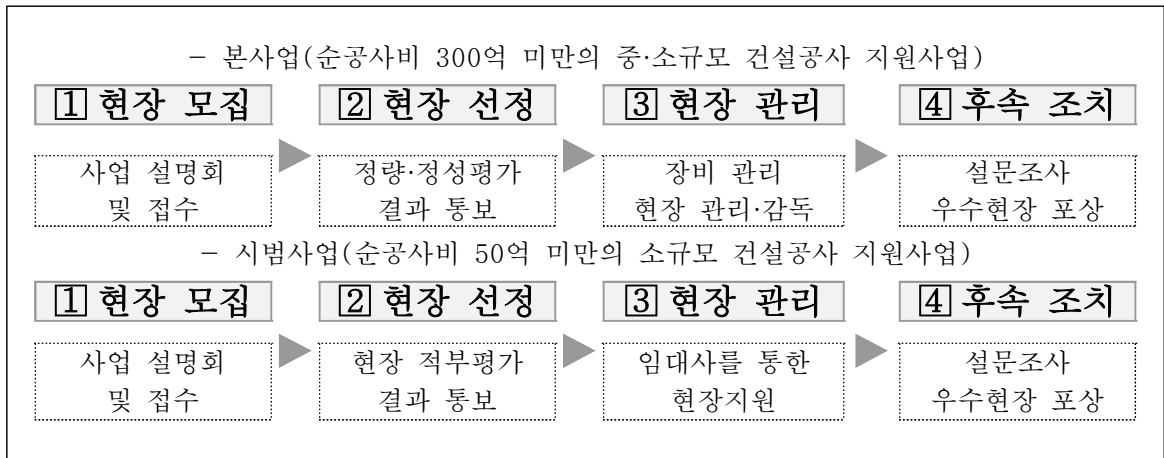
구 분	스마트 에어백 조끼	장비협착경보 알림장비	위험구역 접근알림장비	개구부 개폐 감지기
사진 (장비명)				
대응 재해유형	넘어짐, 떨어짐	끼임, 충돌	끼임, 충돌	넘어짐, 떨어짐

- (시스템 구축) 국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 중 지원사업에서 활용 가능 기술을 연계하고, 보완하여 자체 시스템 구축 추진
- (매뉴얼 마련)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관리 및 운영 매뉴얼 마련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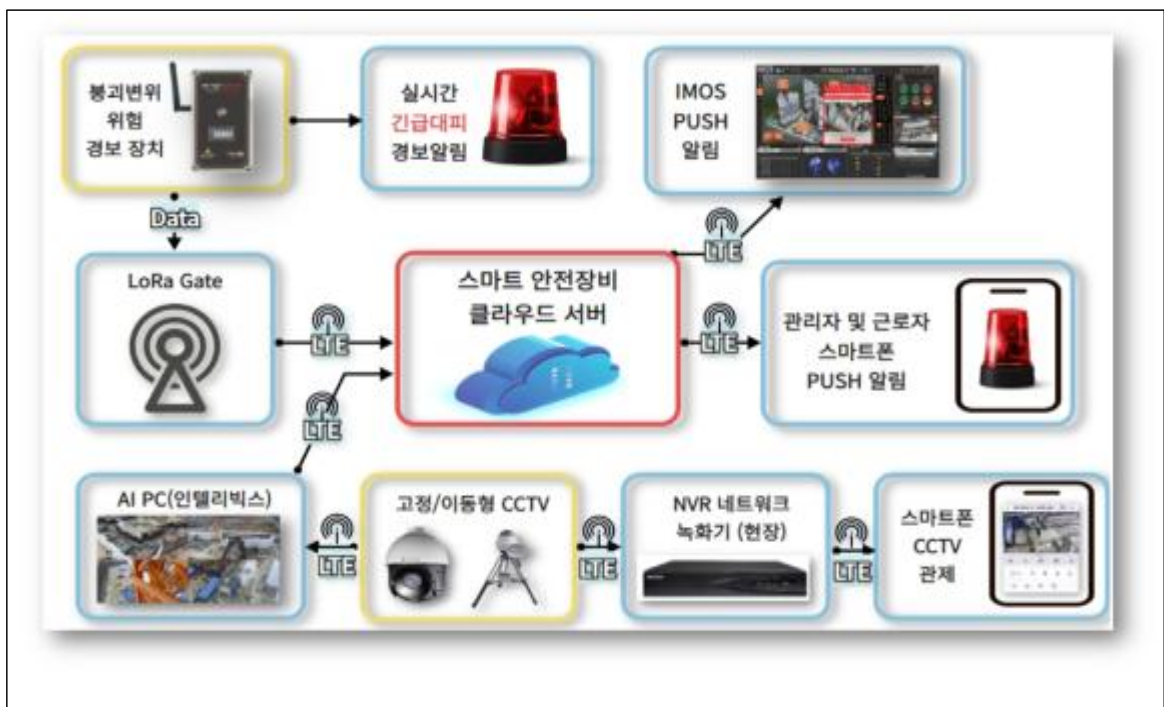
○ 업무 추진 및 예산 현황

연 도	‘21	‘22	‘23	‘24	‘25(목표)
계(①+②)	12	32	87	159	200(목표)
① 본사업	12(시범사업)	32	87	134	130(목표)
② 시범사업	—	—	—	25	70(목표)
예산 (집행 기준)	500백만원 (관리원 출연금)	2,000백만원 (국토부 1,000백만원, 관리원 출연금 1,000백만원)	1,000백만원 (관리원 출연금)	3,056백만원 (관리원 출연금)	3,056백만원 (관리원 출연금)

○ 사업 추진 체계



○ 스마트 안전장비 통신 연계도



○ 추진일정

세부내용	202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수립(기완료)												
용역발주(기완료)												
본사업 운영												
시범사업 운영												
시스템 구축												
매뉴얼 마련												

○ 주요성과

- '24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참여 현장 159개소의 장비 지원 기간 중 사망사고 ZERO달성
- 품질, 성능확인, 설치 기준 등 스마트 첨단기술(장비) 제도적·체계 기준 마련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 스마트화 기여

□ 기대효과

-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하여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향상을 통해 건설공사 사고 사망자 감축
-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자율적인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기틀 마련

□ 스마트 안전장비 분류체계도

